제24차 유엔총회의 공산측책동에 대하여

1969. 8

목 차

1. 서 언 1

2. 「유엔」군 및 「언커크」 설치의 법적근거 3

3. 공산측의 저의 4

4. 서방측의 대응책 5

5. 우리의 대응책 7

"제 24 차 「유엔」총회의 공산측 책동에 대하여"

1. 서 언

제24차 「유엔」총회가 오는 9월16일 (화) 개막된다.

한국문제는 매년 「유엔」총회에서 냉전의 유산으로 논란되어 왔으며 동·서간의 협상「무드」를 저해시키는 의제로서 달갑게 여겨지지 못 하였었다. 지난 총회이래 한국문제의 자동상정방식을 재량상정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언커크」로 하여금 수시로 한국사정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무총장이 각 가맹국에게 통보토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공산측에서는 총회개최 1개월전에 보충의제로서 "외군철수안"과 "(언커크)해체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안은 과거 서방측이 제출한 한국문제의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번 의제에는 한국문제의 상정은 없는 반면 공산측이 제기한 보충의제는 총회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총회의사 규칙 14조 : 보충의제 : 정기회기개최 1개월전, 어떠한 가맹국, 또는 「유엔」기관 혹은 사무총장은 보충의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공산측에서 취한 절차는 일응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산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유엔」총회에서 매년 상정 되풀이 된 것이고 그것이 채택은 되지 않았어도 선전효과를 노리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엔」군 및 「언커크」설치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가맹국의

절대 다수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1950년에 설치하게 된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 당시보다 가맹국 수가 2배이상 증가 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식민지였던 것이 신생국으로 대거 독립「유엔」에 가입하게 됨으로써「유엔」에서의 판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신생제국의 대부분은 미국측 주장에 동조하는 것 보다는 쏘련측 주장에 보다 동조적인 경향이 있고 특히 냉전「잇슈」(issue)등에 대하여는 외면 또는 기권으로 임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리하여 한국문제는「유엔」에서 점차 인기가 없고 골치아픈 의제로서 경원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미국측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이래 자동상정을 재량상정으로 종용한 것이 였었다.

2. 「유엔」군 및 「언커크」설치의 법적 근거

「유엔」군 파한은 북괴의 남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월25일, 6월27일)에 따라 동년 7월7일 「유엔」통합군사령부설치에 관한 결의안 (S/1588)〔찬: 7 반: 0 기권: 3 (애급, 인도, 유고)〕이 채택 됨으로써 (쏘련은 불참) 그후 「유엔」군이 한국을 지원하고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커크」도 1950년 10월7일 총회결의 376호로 설치하게 되었다. 「유엔」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보조기관으로 여하한 기관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보조기관의 임무가 종려 되었거나 총회가 그 필요성이 없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동 기관은 해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1950년 12월 1일 한국의 부흥을 위한 「운크라」설치를 총회가 결의한 다음 1958년 그 임무가 완려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해체시킨바 있다. 한국에 주둔한 외군철수문제는 1948년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과 외군 철수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한반도에서 미·쏘 양국이 철수한바 있었다. 이와 같이 「언커크」 외군철수 등 문제는 총회의 단순과반수로서 결의안을 채택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총회절차 규칙87조(구 126조) 및 헌장 제18조〕

3. 공산측의 저의

공산권제국이 보충의제로 제기한 것은 동 안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리라는 기대가능성 보다는 선전효과를 노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겠다.

즉 그들이 상투적으로 내 거는 것은

① 주권국가에 외군이 주둔하는 것은 주권침해이고 「유엔」군이라는 명의하에 있으나 미군에 불과하다는 것과

② 한국동란시의 가맹국 보다 배 이상의 가맹국 수가 늘었고 19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다는 점

③ 「언커크」구성도 서방측 국가로 구성되어 이들은 미국측 주장을 대변하는 구실밖에 못하고 있다고 본 기구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시는 구성국가의 개편 즉 중립 및 공산국의 구성국으로서의 참가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언커크」해체안이 채택되지 않을 시는 총회 제5위원회(예산 및 행정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언커크」예산안 심의시 예산삭감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방측을 수세에 몰아놓고 그들의 선전공세를 하는데 편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견 신생제국들에게는 어느정도 동조 혹은 관심을 사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4. 서방측의 대응책

① 상황에 따라서는 「유엔」내에 영향력이 있는 중립국가를 앞장세워 공산측 결의안에 대한 수정결의안 즉, 「유엔」군 및 「언커크」존속에 관한 수정결의안을 제출케 한다. 이 수정결의안은 총회절차 규칙 92조에 의거 공산측 결의안에 앞서 표결케 됨으로 수정결의안 제출도 공산권 책동을 사전에 제 제 할 수 있다.

② 공산측이 〃외군철수〃 「언커크」 해체안을 의제로 상정하게 됨으로 한국문제 (Korean Question) 가 논의 될 것이다.

1961년 이래 「조건부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제기되고, 북괴는 이를 수락치 않고 대한민국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찬성표는 60 ~ 70표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유엔」헌장의 규정은 어떤사태, 문제, 분규 등을 검토함에는 관계당사국을 초청하여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헌장 제32조)

만일 북괴가 「유엔」의 초청에 응하였을때 (항상 공산측에서는 북괴의 초청을 내 세우고 있음) 에는 북괴의 참석을 저지 시킬 방도가 없다. (물론 「비자」발급을 미국무성에서 거절하면 가능하나 「유엔」서 초청이 결정되면 대국인 미국이 국제여론상 「비자」발급의 거부는 못할 것임. 1950년 한국동란시 중공대표가 초청되어 증언차 안보리에 참석한바 있음)

따라서 북괴가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여 서방

측과의 대 UN전략과 이에따르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③ 「언커크」의 해체가 저지되면 그들이 「언커크」의 개편을 요구할 지 모른다. 그럴경우 서방측은 양보하여 「언커크」의 개편에 응하는 동시에 「언커크」의 활동이 한반도 전역에서의 활동이 가능토록 보장을 공산측에 요청하여야 된다. (북괴측은 이미 「언커크」 전신인 한국통일임시위원단의 북한입국을 거부한바 있으므로 남한에서만의 총선이 실시된 것임. 따라서 북괴 등은 전반도에서의 「언커크」 활동보장에는 난색을 표명할 것이 예상됨)

5. 우리의 대응책

① 외무부장관 명의로 「유엔」의 권능과 결의를 준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기록을 남길 것 (의례적인 것이나 선수는 때린 필요함)

② 정부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표에 너무 과잉 신경을 쓰고 있는 인상을 씻을것.

그 이유는 「유엔」에서 몇표의 지지표를 더 얻고 못 얻고가 우리의 국위선양인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특히 「유엔」등에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 대하여 적극외교로 유대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국제무대에서의 국위선양에 보다 보탬이 되는 것임.

국민과 통치자에게 지지표를 얻는 것이 「유엔」외교인양 그릇 인식을 시키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즉 「유엔」외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의의도 있지만 실은 국내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비중을 두고 있다.

「유엔」가맹국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신생국 대부분은 서구진영의 식민지 였었으며 인구면에서 백만이하의 소국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강대국과 백만이하의 약소국이 1대1의 표로서 임하는 것이 「유엔」실정이므로 지지표 수의 증가는 이제 어느정도 한계점에 이르렀고 항상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지지표 수에만 신경을 쓰면 유동적인 국제사회인 「유엔」에서 몇표가 줄어들어도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에 차이가 없으나 국내정치면에서 집권층에 대한 국민과 야당으로 부터의 정치적인 공격과 뒷덜미를 잡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항시 국민들에게 지지표 증감에 과잉된 신경을 쓰지않도록 계몽과 이해를 촉구시킬 필요가 있다.

③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에 참가한다고 하여 그 회의에 참가한 국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례가 국제사회에는 확립되어 있다. 국가승인은 개별적으로 당사국끼리 승인하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어떤 회의에 북괴와 동석하였다고 하여 북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서서히 계몽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유동적인 국제정세하에 장차 「유엔」또는 국제기관에서 북괴와 동석하게 될 때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국내정치면에서 야당세력으로 부터의 공격비난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④ 「유엔」등에 북괴가 설사 참석한다고 두려울 것이 없으며 그들이 참석하면 그들을 공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명심하고 이들을 공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 대응책을 강구할 것.

⑤ 「유엔」총회에서 간행되는 간행물 (Officicl document 및 mimeographlos) 은 전부 수집하여 장기적인 아목에서 동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놓을 것.

「유엔」 총회 등 자료는 방대하므로 이를 분석하는 인원 및 예산의 지원 등 뒷받침을 정부예산에서 반영토록 할 것.

⑥ 북괴의 만행 등을 기록영화, 책자로 작성하여 한국의 발전상과 함께 가능하면 「유엔」가맹 각국에게 배부토록 P·R면에도 치중할것.

⑦ 정부는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확고한 기반밑에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한국문제 통일문제 등에 있어서는 「유엔」의 어떠한 국가대표, 비가맹국 대표와도 정정 당당히 대하여 우리측 주장을 내 세울 수 있고 대화에 궁색치 않고 폭 넓은 민주국가임을 과시토록 할 것.

⑧ 중립제국의 국내영향력이 있는 민간지도자 (예. 연구기관, 예술인, 언론인 등 중에서 그나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를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할 것.

⑨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는 각종간행물의 발간기관명은 관의 명의를 피하고 민간기관, 민간연구단체 명의로서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므로서 동 내용에 대한 공신력이 높고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관의 명의의 간행물은 외국에서 받아볼때

일방적인 선전의 냄새가 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감소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⑩ 「유엔」에 있어서 조만간 인구 7억5천만의 중공이 「유엔」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의석을 「유엔」에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규가입(새로 가입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서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권(대표에 대한 신탁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하여는 다만 총회서 결정하게 되므로 총회의 다수결로 국부대표 대신에 중공대표의 대표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 대표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으로 총회의 3분의2로서 결정하자는 결의를 1961년이래 결정하여 이 원칙이 고수되어 왔으나 만일 총회에서 다수결(단순과반수)로서 대표권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중공의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표권은 절차사항임)정부는 중공의 대표권이 「유엔」서 인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대 중공에 정책 및 중공연구 등에 큰 비중을 두어 이의 연구를 긴 안목하에 추진할 것.

⑪ 한국문제는 아세아에서 미·쏘·중공·일본 등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미리 해 둘것.